

# 공 보

**제528호 2016. 3. 16. (수)**

선 결	기관의 장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6 - 290호 공인 등록 공고 .....	2
거창군 공고 제2016 - 291호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3
거창군 공고 제2016 - 292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10
거창군 공고 제2016 - 293호 공인 폐기·등록 공고 .....	11
거창군 공고 제2016 - 294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	12
거창군 공고 제2016 - 295호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	13
거창군 공고 제2016 - 299호 LED 조명 주민보급사업 지원 공고 .....	14
거창군 공고 제2016 - 304호 송정도시개발 사업지구 도로명 부여를 위한 의견수렴 공고 ..	23

회 람									
--------	--	--	--	--	--	--	--	--	--

거창군 공고 제 2016 -290호




## 공인 등록 공고

「거창군 공인조례」 제6조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10.

## 거창군수

1. 등록사유 : 거창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신설
2. 등록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 3. 9.
3. 등록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거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지출원인	2.0cm×2.0cm	
거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경리관인	2.0cm×2.0cm	
거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징수관인	2.0cm×2.0cm	

##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2. 개정이유

- 공직자 외부강의 대가기준(원고료)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

3. 주요내용

-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
- 외부강의·회의 등의 횟수·시간 제한
-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 금액 반환 의무화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기획감사실장)에 서면이나 메일(oasis934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055)940-3064 / fax 940-30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기획감사실)

붙임 1.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안 1부.

2.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안

의안 번호	2016 ~
----------	--------

제출연월일	2016. 3 . .
제 출 자	기획감사실장

##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의거 공직자 외부강의 대가기준(원고료)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원고료 포함 [안 제15조]

- 현행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은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을 원고료가 포함된 기준으로 개선

- 외부강의·회의 등의 횟수·시간 제한 [안 제15조]

- 대가를 받는 모든 강의·회의 등(강의,강연,발표,토론,자문 등)에 대해 월 3회· 6시간으로 제한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월 3회·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 금액 반환 의무화 [안 제21조]

-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미편성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의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2016. . . ~
- 4) 비용추계서 : 해당여부 검토 후 기술
-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p> <p>① (생략)</p> <p>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p> <p>③ (신설)</p>	<p>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p> <p>①(현행과 같음)</p> <p>②----- ----- ----- ----- ----- <u>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u></p> <p>③ <u>거창군 소속 공직자가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 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p> <p>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①----- ----- <u>받거나 제15조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u> ----- ----- ----- -----</p>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5조 제2항 관련)

<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

(단위: 천원/ 1시간)

구 분	군수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300	230	120	<u>원고료</u> <u>포함</u>
1시간 초과	200	120	100	

-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 동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안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신설한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 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거창군 소속 공직자가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4조 또는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제15조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2016. 3. 11.

### 거창군수

- 거창군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거창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16. 3. 11.
  - 제공받는 자 : (주)한명전산
  - 제공목적 :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를 위한 OCR고지서 인쇄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제18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종, 부과대상 차량번호, 부과대상 건물소재지, 납부금액, 전자납부번호, 고지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환경개선부담금 OCR고지서 출력작업 완료시까지
  - 공고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공고기간 : 2016. 3. 11. ~ 3. 25. (15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거창군 공고 제 2016 - 293호


## 공인 폐기 · 등록 공고

「거창군 공인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고, 제6조에 따라 공인 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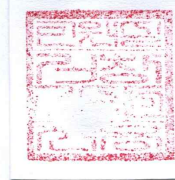
2016. 3. 11

### 거 창 군 수

1. 등록사유 : 민원사무용 자동인증기 교체에 따른 등록
2. 등록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 3. 11
3. 등록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민원사무거창군수인전용	2.4*2.4	

4.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민원사무거창군수인전용	2.4*2.4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6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읍·면사무소, 민원실, 군청 홈페이지에 비치 또는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 기 간 : 2016년 3월 15일 ~ 4월 4일
- 장 소 :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거창군 홈페이지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 및 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6년 3월 15일 ~ 4월 4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처 :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재무과
- 제출방법 : 읍.면사무소 및 홈페이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16년 공동주택가격(안)」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람

- (기간) 2016년 3월 15일 ~ 4월 4일
- (장소)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http://www.molit.go.kr))
  -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내용) 2016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 □ 의견제출

- (기간) 2016년 3월 15일 ~ 4월 4일
- (제출사항)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인터넷 또는 직접 제출·우편·팩스
  - 인터넷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http://www.molit.go.kr))
  - 직접 제출·우편·팩스 :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지사)

###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16년 4월 26일 개별통지(서면 제출의견)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16년 4월 26일~4월 28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열람 가능

## LED 조명 주민보급사업 지원 공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정된 LED 조명등 보급·확대를 통하여 국가 에너지 절약시책에 부응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우리군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코자 「LED 조명등 주민보급사업」을 공고합니다.

2016년 03월 14일

거창군수

1. 사업명 : LED 조명등 주민보급사업
2. 지원대상 : 기존 저효율 일반 조명등을 고효율 조명기기 LED조명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주택소유자
  - ※ 2014년, 2015년 LED조명 주민보급사업 기 지원가구는 제외
3. 사업비 : 72,000천원 <세대당 400천원한도 지원>
4. 지원기준
  - 가. 지원품목 : 방등, 거실등, 주방등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LED 조명등
  - 나. 지원금액 : 가구당 총사업비 50%로 한 가구당 최고 400천원 이내
  - 다. 지원범위 : LED 조명등 구입비(설치비는 본인부담)
    - ※ 보조금 교부신청시 시공자로부터 발급받은 설치확인서 첨부
5. 사업기간 : 2016년 04월 ~ 12월
6. 사업신청서 접수 및 선발기준
  - 가.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03. 14. ~ 04. 13.
  - 나. 선발기준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주택소유자가 신청)
  - 다. 접수결과 사업예산 미달시 예산 소진시까지 2차 접수기간 추후 공지
7. 신청 절차 및 양식 : 붙임 참조

## 8.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가. 본 공고문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

나. 공고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괄 사업추진

## 9. 기타사항

가. LED 조명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KC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함.

나. 등기구의 설치 및 교체는 전력부하설비이므로 「전기공사업법」제3조에 따라 반드시 전기공사업자에게 시공하여야 함. 다만, 전압이 600볼트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킬로와트 미만인 단독주택의 경우는 전기공사기술자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창조산업과 에너지 담당 (☎055-940-3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ED 조명 주민보급사업 설치계획서

## 1. 설치장소

건물유형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재지	

## 2. 기존 조명기기 설치현황

사용구역	종류	규격	1등당 용량	1일 사용시간	월간 사용량(KWh)
방1	직관형형광등	FPL32W/2	64W		
방2	환형형광등				
방3					
부엌					
거실					
합계					

## 3. 설치(예정) 수량

사용구역	제품명	인증여부	규격	1등당 용량	월간 사용량(KWh)
방1			LED50W	40W	
방2					
방3					
부엌					
거실					
합 계					

## 4. 신청금액

(단위 : 원, VAT포함)

제품명	규격	1등당 용량	단가 (원/개)	설치수량(개)	지원금액 (원)	비고
합 계						

## 5. 에너지절감량

사용구역	월간사용시간 (h/m)	절감전력 (kW)	에너지절감량 (kWh)
방1			
방2			
방3			
부엌			
거실			
합계			
총 에너지절감량			kWh



# 교체 예정 등기구 사진

- 사업대상자 :
- 설치장소 :
- 추진전경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 거창군 LED조명 주민 보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동전화 )			
설치장소	소 재 지	경남 거창군			
	건물유형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 청 보조금 (VAT포함)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원		원
설치내역	사용구역	소비전력	수량	단가	사업비
	방1				
	방2				
	방3				
	부엌				
	거실				
	합계				
<p>위와 같이 거창군 2016년도 LED조명 주민보급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2016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 청 자                                  (인)</p>					
<p>거창군수 귀하</p>					
<p>&lt;첨부서류&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금계산서 및 입금영수증 1부.</li> <li>2. 교체 등기구 전·후 사진 1매.</li> <li>3.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1부.</li> <li>4. 시공자 설치확인서 1부.</li> </ol>					

# 교체 등기구 전·후 사진

- 사업대상자 :
- 설치장소 :
- 추진전경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 LED조명 등기구 설치확인서

## 1. 일반사항

건축물 개요	소재지			
	용 도			
	소유주		전화번호	
시공사	성 명		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 2. 설치내역

설치장소	제품명	규격	용량	특기사항

귀하의 조명기구 설비 설치확인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공사 : 전기공사기술자

(인) 자격번호 :

귀하

구비서류 : 시공사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송정도시개발 사업지구 도로명부여를 위한 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송정도시개발지구에 대한 도로구간 및 도로명부여를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6일

# 거창군수

1. 공고기간 : 2016. 3. 16 ~ 3. 30 (14일간)
2.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 게시판
3. 대상도로구간
  - 송정도시개발 사업지구 도로명부여 : 10개 구간
4.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 관계서류 : 도로구간 및 예비도로명 등
  - 열람방법 : 군 홈페이지, 민원봉사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열람
5.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
  - 제출기간 : 공고기간 내
  - 방문접수 : 거창군 민원봉사과 및 읍사무소
  - 팩스접수 : 055)940-3288
  - 우편접수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
6. 도로명부여 절차

<b>도로명 부여 신청</b>	신청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b>주민의견 수렴공고</b>	주민의견 수렴 한 날부터 → 30일 이내	<b>도로명주소 위원회 개최</b>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b>고시 및 통보</b>
개발사업 시행자, 건물등의 소유자		14일 이상		도로구간 및 도로명 심의의결		·심의결과 ·내용 및 절차

※ 문의처 : 거창군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 : 055-940-3312)